

중국의 지방세제

양 인 병

행정안전부 공인회계사

I. 전체 조세체계(국세+지방세)

〈중국의 조세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유수입	중앙정부수입	지방정부수입
증치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이자소득제외), 자원세, 도시보호건설세, 증권거래에 대한 인지세	소비세, 차량취득세, 관세, 선박세	재산세, 취득세, 경지점용세, 토지증치세, 차량선박사용세, 도시농촌토지사용세

- 중국의 현행세법은 2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5개 세목이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음
- 중국은 간접세위주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06년 조세수입은 37,636억 위엔으로 그 중 간접세인 증치세, 소비세 및 영업세의 수입이 각각 12,894억 위엔, 1,886억 위엔 및 5,129억 위엔으로 그 비중은 34.3%, 5.0% 및 13.6%에 달하여 간접세의 비중이 약 53%에 이르고 있음. 현재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직접세위주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간접세위주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간접세위주의 조세체계는 점진적으로 직접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전환됨

- 중국 현행 세목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중국의 현행세목 분류〉

분 류	세 목	성격 및 작용
소득세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생산경영자의 이윤과 개인의 순소득에 대한 조절작용
소비세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조절작용
자원세	자원세, 토지사용세	자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의 차이에 의한 소득 차이에 대한 조절작용
재산 및 행위세	재산세, 차량선박세, 인지세, 도축세, 취득세	재산과 행위에 대한 조절작용
특정목적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연회세, 도시보호 건설세, 토지증치세, 차량취득세, 경지점용세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대상 또는 행위에 대한 조절작용
관세	관세	수출입화물, 물품에 대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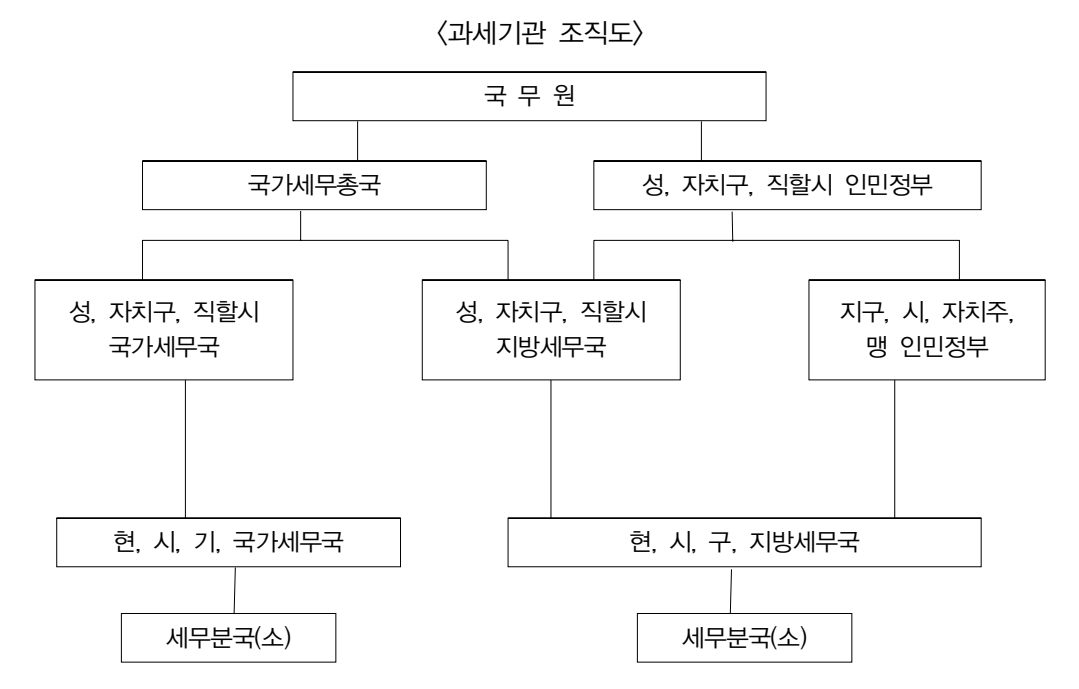
- 중국은 현재까지 5차례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져왔으며 그 중 가장 최근 세제개혁으로 1994년에 유통세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유통세의 전면적인 개혁에 따라 증치세를 위주로 한 소비세와 영업세가 병행 실시 되었으며, 내국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② 기업소득세를 개정하여 과거 국유기업, 집체기업 및 사영기업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적용하여 징수하던 기업소득세를 하나로 통일
- ③ 개인소득세를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내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조절세 및 개체공상호소득세를 하나의 개인소득세로 통일
- ④ 자원세, 특별목적세, 재산세, 행위세 등 각종 조세를 조정하였으며, 토지증치세를 신설하였고, 염세와 상여금 및 시장교역세 등이 폐지되었음

- 중국의 조세관리체계에 있어서 ‘국무원’은 최고의 국가권력집행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는데 필요 시 국무원에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잠정규정 또는 잠정조례의 제정권을 부여함

-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는 일종의 법률형식으로서 중국의 법률형식 중에서 헌법, 법률보다는 그 지위가 낮으나 지방법규, 각 부처의 규정, 지방의 규정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됨

- 1988년에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개혁과 함께 국가세무국을 설립하여 국무원이 직접 관장하였고, 1993년에는 세무총국을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의 국가세무총국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전국의 과세기관을 국가세무총국, 성(자치구, 직할시)세무국, 지(시, 주, 맹)세무국, 현(시, 기)세무국으로 편제를 함. 1994년 세제개혁 시에 분세제의 실시에 따라 과세기관을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으로 구분함



(*) 2005년 기준 : 성급 세무국 61개, 부성급 도시세무국 30개
시 급 지방세무국 1,027개, 현급 세무국 5,288개
세무분국(소) 30,915개
총 종사인원 84만 4천 명(국세국 45만 7천, 지방세국 38만 8천)

관리부문	관리대상세목
국가세무국	증치세, 소비세, 차량취득세, 철도와 은행본점 및 보험회사본점이 총괄하여 납부하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소득세, 중앙소속 기업의 기업소득세 등
지방세무국	영업세, 도시보호건설세, 지방소속기업의 기업소득세, 차량선박세, 개인소득세, 인지세, 자원세, 재산세, 토지사용세, 토지증치세 등
지방재정부문	경지점용세, 취득세
세 관	관세, 수출입증치세 및 소비세

- 국무원의 분세제재정관리체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국은 조세수입을 중앙정부수입과 지방정부수입 및 중앙·지방공유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공유수입은 다음과 같이 그 세수를 구분하고 있음

〈중앙·지방공유수입의 배분비율〉

세 목	중앙정부	지방정부
증치세(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수입증치세 제외)	75%	25%
영업세 - 철도부문, 각 은행본점 및 보험회사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부분 - 그 이외의 부분	100%	100%
기업소득세 - 철도부문, 우정국,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 건설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중국석유화학주식회사,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기업이 납부하는 부분 - 그 이외의 부분	100% 60%	 40%
외상투자기업소득세 -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기업이 납부하는 부분 - 그 이외의 부분	100% 60%	 40%
개인소득세(이자소득세를 제외)	60%	40%
자원세 - 해양석유기업이 납부하는 자원세 - 그 이외의 부분	100%	100%
도시보호건설세 - 철도부문, 각 은행본점 및 각 보험회사본점이 총괄하여 납부하는 부분 - 그 이외의 부분	100%	100%
증권거래에 대한 인지세	97%	3%

Ⅱ. 지방세의 체계

구 분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및 기타
공동세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이자소득제외)	증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보호건설세, 증권거래에 대한 인지세
지방세	-	-	취득세, 재산세, 도시농촌 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토지증치세, 차량선박사용세

1. 공동세 세목

■ 증치세

- 증치세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재화를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 수리수선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이 수취한 대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
- 중국의 증치세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와 그 체계 및 운영에 있어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 단체 1) 국유기업 - 국가소유의 기업이나 소유경영분리원칙에 의거 국가로부터 경영권을 위임 받아 경영을 하는 법인자격을 갖춘 기업을 의미 2) 집체기업 - 기업의 모든 재산이 당해 기업에 투자한 노동집단 또는 조직에 귀속되며, 기업의 조직원은 공동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된 노무에 따라 수익을 분배 받는 기업을 의미 3) 사유기업 - 기업의 재산이 개인 또는 다수에게 속한 기업을 의미 4) 주식제 기업 - 최저자본금이 1,000만 위엔 이상으로 조직된 기업 □ 개인 - 본인과 종업원을 합하여 8인 이하로 구성된 개체경영자와 기타 개인을 의미 □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1) 외상투자기업 - 외국투자자가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법률에 의거 중국 내에 설립한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상투자기업 2) 외국기업 - 외국법률에 의거 국외에 등기 설립된 기업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은 법인의 자격을 갖추 수 없으며, 또한 중국내에서 단지 본사의 명의로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음 □ 임차 또는 도급 경영자 - 기업을 임차 또는 도급받아 경영하는 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갖고 법률적책임을 지므로 별도의

구 분	내 용
	사업자에 해당하여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그러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소그룹을 정하여, 그룹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소그룹은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 국외기업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함 ※ 상기의 납세의무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 및 회계결산자료 등의 제출능력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u>소규모납세자</u>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사업자와 유사한 과세방식으로서의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일반 증치세 납부세액계산방식 대신에 일정 징수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과세하므로 소규모납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음 ① 세금계산서의 사용불가 ② 매입세액 공제불가 ③ 환급받을 세액의 이월공제 불가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서 전력, 열, 기체를 포함한 유형동산을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건물 및 기타건축물 등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재화로 규정함 ※ 증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① 재화의 공급이 성립되어 증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재화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바, 임대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권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② 국내의 외상투자기업의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수입을 국내본점에서 받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의 시발점과 소재지가 국내가 아니므로 증치세를 과세할 수가 없음 ③ 기타 비과세재화의 범위 - 시설리스 - 저작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화필름원본 및 비디오테이프원본 - 사업의 양도 - 폐자원수거업체가 수거하여 판매하는 폐자원 - 채권을 자본 전환하는 기업의 현물출자 - 금 또는 사금의 판매 - 미 가공 천연수의 공급 및 채굴 -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체 생산한 건축자재

구 분	내 용
	□ 재화의 수입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재화의 수취인, 통관수속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수입재화의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화가 국경을 통과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때 또는 보세창고 등으로부터 반출이 되어 국내시장에 투입되는 때에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용역의 공급 가공 또는 수리수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납세하여야 하나 영업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함 □ 간주매출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경우에는 재화가 유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징수함 - 타인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하는 행위 -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 - 내부거래행위의 경우 - 자기가 생산하거나 또는 위탁 가공한 재화를 증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는 행위 - 자기가 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행위 - 자기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기증하는 행위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월로 고정되지 아니하며, 납세자의 당해 연도 월평균 예상세액을 근거로 전년도 실제 납부할 세액, 기타의 실제상황 및 일선과세기관의 징수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과세기관이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함
신고납부	1) 과세기간이 1월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납부하고 2)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내에 증치세를 예정납부하고, 다음달 1일부터 10일 내에 증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전월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산하며 3)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납부서를 발급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되고 4) 납세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월 과세기관에 당해 수출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 납부기한의 종료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함
납세지	납세지는 지역관할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서로 다른 지역 간에 있어서는 공급지원칙을 적용함. 예외-주사업장 총괄신고납부제도

구 분	내 용
세 율	〈일반세율〉 일반적인 증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기본세율(17%)을 적용함 다만, 다음의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13%)을 적용함 - 양곡, 식용식물유 - 난방, 냉기, 온수,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서민용 석탄제품 - 도서, 신물,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 농기구(농기구부품제외) - 농산품, 금속 선광제품, 비금속선광제품 - 기타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재화 〈영세율〉 영세율이란 납세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적용 다만, 다음 각 호의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징수함 - 천연우황 - 사향 - 구리 또는 구리합금 - 백금 - 설탕
납부할 세액	1) 일반납세자의 경우 <u>납부할 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u> □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 여기서 ‘매출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구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대가와 대가 이외의 비용을 말하나, 매출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매입세액 여기서 ‘매입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거나 또는 부담하는 증치세 세액을 말함. 그러나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제조건, 금액 및 공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소규모납세자의 경우 <u>납부할 세액 = 매출액 × 징수율(6% 또는 4%)</u> 3) 수입재화의 납부할 세액 <u>납부할 세액 = 조성가격 × 세율</u> (*) 조성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구 분	내 용
	여기서 ‘관세과세가격’이라 함은 세관이 조사 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FOB가격을 말하며, 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함. 참고로 FOB가격이라 함은 재화의 가액에 수입재화가 국내수입지점에 도착하기까지의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및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가격을 말함
조세감면	□ 자가 생산 농산품에 대한 면세 - 농민이 직접 식물의 재배, 수확 및 동물의 사육, 포획에 종사하여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면제 □ 정부비축양곡 및 식용식물유에 대한 면세 □ 영농관련 재화에 대한 면세 - 단일사료, 배합사료 및 종자, 농업용 비닐 등 □ 군대 및 군수산업에 관한 면세 □ 고등학교 지원부서에 대한 면세 □ 의료, 위생에 대한 면세 □ 철로화차수리에 대한 면세 □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면세 □ 기타
세금계산서 제도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수취하는 거래상의 증빙일 뿐 만 아니라 매출세액의 계산과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법정증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증치세의 계산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세무총국은 세금계산서의 사용범위, 발행방법, 보관방법 및 세금계산서로 인한 각 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영업세

- 영업세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무형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수취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임. 현행 영업세는 증치세가 과세되는 가공, 수리수선용역을 제외한 용역과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과 부동산의 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철도부문, 각 은행본점 및 보험회사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세가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됨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유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 기업, 행정단체, 사업단체, 군사단체, 사회단체, 기타 단체와 개체공상호, 기타영업행위를 하는 개인 및 중국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외국인

구 분	내 용
과세 대상	국내에서 제공되는 과세용역과 양도되는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이 포함 1) 과세용역의 범위 - 운송용역 - 건축용역 - 보험용역 - 우편통신용역 - 문화체육용역 - 과세유흥장소 또는 유기장 제공용역 - 서비스 2) 무형자산의 범위 - 토지사용권 - 상표권 - 특허권 - 노하우 - 저작권 - 브랜드 3) 부동산의 범위 - 건축물 - 구축물 - 토지부착물
과세기간	영업세의 과세기간은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기간이 5일, 10일, 15일 또는 1월로 결정함. 과세기간은 고정할 수 없고, 거래발생 회수에 따라 영업세를 신고납부
신고납부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내에 납부할 세액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세무국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이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5일 내에 예정납부를 하고, 익월 10일 내에 정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의 종료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함
납세지	1) 과세용역의 제공 과세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고 운송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

구 분	내 용																														
	2) 무형자산양도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고,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 3) 부동산양도의 경우 부동산소재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 4)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원천징수한 영업세를 신고납부 5) 공사현장이 둘 이상의 성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 6) 임대용역의 제공 토지사용권을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비 등 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영업세를 신고납부																														
과세표준	납세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무형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와 대가이의 비용에서 규정된 비용(예, 무형자산양도소득계산 시 취득가액)을 차감함. 여기서 대가이의 비용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기금, 보상금, 대리수취금액, 대리지급금액 및 기타 각종의 대가이의의 비용이 포함																														
세 율	<table><tr><th>과세대상</th><th>구체적 적용 범위</th><th>적용세율</th></tr><tr><td>운송업</td><td>육로운수, 수로운수, 항공운수, 파이프운수, 하역운반</td><td>3%</td></tr><tr><td>건축업</td><td>건축,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td><td>3%</td></tr><tr><td>금융보험업</td><td></td><td>5%</td></tr><tr><td>우편통신업</td><td></td><td>3%</td></tr><tr><td>문화체육업</td><td></td><td>3%</td></tr><tr><td>과세유흥장소 또는 유기장</td><td>가무청, 가라오케, 음악다실, 당구, 골프, 볼링, 오락</td><td>5~20%</td></tr><tr><td>서비스업</td><td>대리, 여관, 음식, 여행, 창고, 임대, 광고 및 기타 서비스</td><td>5%</td></tr><tr><td>무형자산양도</td><td>토지사용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브랜드</td><td>5%</td></tr><tr><td>부동산양도</td><td>건축물, 기타 토지부착물</td><td>5%</td></tr></table>	과세대상	구체적 적용 범위	적용세율	운송업	육로운수, 수로운수, 항공운수, 파이프운수, 하역운반	3%	건축업	건축,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3%	금융보험업		5%	우편통신업		3%	문화체육업		3%	과세유흥장소 또는 유기장	가무청, 가라오케, 음악다실, 당구, 골프, 볼링, 오락	5~20%	서비스업	대리, 여관, 음식, 여행, 창고, 임대, 광고 및 기타 서비스	5%	무형자산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브랜드	5%	부동산양도	건축물, 기타 토지부착물	5%
과세대상	구체적 적용 범위	적용세율																													
운송업	육로운수, 수로운수, 항공운수, 파이프운수, 하역운반	3%																													
건축업	건축,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3%																													
금융보험업		5%																													
우편통신업		3%																													
문화체육업		3%																													
과세유흥장소 또는 유기장	가무청, 가라오케, 음악다실, 당구, 골프, 볼링, 오락	5~20%																													
서비스업	대리, 여관, 음식, 여행, 창고, 임대, 광고 및 기타 서비스	5%																													
무형자산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브랜드	5%																													
부동산양도	건축물, 기타 토지부착물	5%																													

구 분	내 용
조세감면	영업세에 대한 감면권한은 국무원에 있으며, 다른 부처 또는 지방정부는 영업세의 감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영업세를 감면받는 사업자는 감면항목 별로 구분하여 기장을 하여야 함 □ 운송업의 감면 - 국외에 임대하는 선박에 대한 면제 - 국제항공통신공동체가 수취하는 대가에 대한 면제 - 도급주는 자가 제공하는 장거리파이프설치도급공사 사용설비에 대한 면제 등 □ 건축업의 감면 - 군공사에 대한 면제 - 자가신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면제 등 □ 금융보험업의 감면 - 금융기관 간 거래로 인한 수입금액 - 금융기관의 어음 재할인, 어음 대리 할인 수입금액 - 경제특구 내 외자금융기관의 특구 내 발생 수입금액 - 농촌보험 - 개인투자배당보험 - 수출신용보험 등 □ 문화체육업의 감면 - 학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찬조금 - 기념관, 박물관 등의 관람수입 - 종교장소의 입장료 -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 □ 서비스업의 감면 -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면제 - 결혼소개서비스 및 장례서비스에 대한 면제 - 의료서비스에 대한 면제 - 사회복지기업에 대한 면제 - 장애인에 대한 면제 - 농·축·임·수산업에 대한 면제 - 군부대에 대한 면제 - 학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면제 등

구 분	내 용
	□ 무형자산양도소득의 감면 - 개인 저작권양도에 대한 면제 - 토지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면제 - 산업재산권, 노하우소유권의 양도에 대한 면제 -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등 □ 부동산양도소득의 감면 -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양도에 대한 면제 - 개인이 무상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제 - 정부건설주택에 대한 면제 - 정부가 규정한 표준원가로 근로자 등에게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 등

■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는 국내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생산 경영소득 및 기타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임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 외상투자기업 1) 중외합자경영기업 -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경제조직과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호혜평등원칙에 의거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업을 말하며, 간단히 합자기업이라고도 함 2) 중외합작경영기업 - 외국기업, 기타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경제조직과 함께 호혜평등원칙에 의거 합작기업법과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작조건을 약정하고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업을 말하며, 간단히 합작기업이라고도 함 3) 외자기업 -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국내에 설립되나 외국투자자가 자본의 전부를 소유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간단히 외상독자기업 또는 독자기업이라고도 함 □ 외국기업 중국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경영에 종사하거나 또는 중국 국내에 사업장은 없으나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기업 또는 경제조직을 말함

구 분	내 용
	※ 외상투자기업은 거주기업에 해당하여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 기업은 거주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외자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상소득	외자기업소득세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취득한 <u>생산경영소득</u> 및 <u>기타소득</u>을 과세대상으로 함 1) 생산경영소득 - 제조업, 채굴업, 운수업, 건축업, 인테리어업, 농업, 임업, 수리업, 판매업, 금융업, 서비스업, 탐사업과 기타업종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2) 기타소득 - 주식배당소득, 이익분배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산업재산권사용료소득, 노하우소득, 상표권소득, 저작권소득 및 영업의 수익 등의 소득을 말함
과세기간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사업연도 중에 개업, 합병, 도산 등의 원인으로 사업연도 중에 실제경영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기간을 사업연도로 함. 그리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을 사업연도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연도로 함
신고납부	□ 일반적인 경우 1) 예정신고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과세기관에 중간예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외자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정기신고 - 외상투자기업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4월 내에 수익의 발생여부에 불문하고 연간소득세신고서, 재무제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익월까지 외자기업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함 3) 신고기한의 연장 - 외상투자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외자기업소득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과세기관에 신고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은 최장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특수한 경우 1) 청산의 경우 - 외상투자기업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공상관리국에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과세기관에 외자기업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 2) 합병, 분할, 휴업의 경우 - 생산 또는 경영을 중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세기관에 외자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관은 60일 내에 납부할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하여야 함
납세지	1)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장소재지관할 과세기관에 외자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중국 내에 지점을 설립한 경우에는 본점관할 과세기관에 총괄 신고납부함 2) 외국기업의 경우 -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그 중 1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외자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 신고납부함

구 분	내 용
과세소득금액	과세소득금액 = 수입금액총액 - 공제 가능한 비용
세 율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이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별도로 과세소득의 3%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므로 총 33%의 세율을 적용함
조세감면	□ 지역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첨단신기술산업개발구, 서부지역, 기타지역에서 제조업등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5% 또는 24%의 경감세율 적용함 □ 생산성외상투자기업의 조세감면 - 비생산성업종을 제외한 기계제조, 전자업 등의 실제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2년간은 외자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외자기업소득세를 50% 경감함 □ 수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조세감면기간이 만료된 이후 당해연도 수출액이 총생산액의 70% 이상인 때에는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세율의 50%를 경감함 □ 첨단신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조세감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첨단신기술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승인을 거쳐 3년간 연장하여 세율의 50% 경감 받을 수 있으나, 감면후의 세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함 □ 에너지,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 에너지, 교통, 항만, 부두 등 기반시설건설에 종사하는 생산성외상투자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 지역의 제한 없이 세율의 50%를 경감받음 □ 재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하였거나 또는 수취할 배당금을 중국 국내에 직접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외자기업소득세에서 재투자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외자기업소득세를 환급함

■ 개인소득세법

- 개인소득세란 개인이 취득한 각종 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임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는 없으나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취득한 과세소득원천의 국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국내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무한납세의무를 짐 2) 비거주자 -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중국 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유한납세의무를 짐

구 분	내 용
대상소득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2조 및 세법실시세칙 제8조의 규정에서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소득항목을 11개로 구분함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개인이 수탁경영, 임차경영 및 채수탁경영, 전대경영으로 취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개인이 수탁경영, 임차경영기간 중에 매월 또는 매회 취득하는 근로소득 성격의 소득을 포함함) 4) 자유직업소득(개인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5) 원고료소득 6) 산업재산권사용료소득(개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 및 기타권리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7) 이자, 주식배당 및 이익분배소득자 8) 임대소득 9) 양도소득(개인이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기설비,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고 취득하는 소득) 10) 우발소득(개인 수상, 복권당첨 및 기타 우발적인 사안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 11) 기타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
신고납부	아래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소득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 7일 내에 과세기관에 과세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1)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매월 예정납부를 함. 납세자는 매월 익월 7일까지 예정납부를 하고 과세연도종료 후 3월내에 납부할 세액을 정산함 2)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연도종료 후 30일 내에 신고 납부함 3) 국외소득 - 국외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외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원천국의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세액정산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내의 관할과세기관에 신고납부함 4) 특정업종의 근로소득 - 채굴업, 원양운송업 및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예정납부하고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연간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한 월평균급여에 대해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연간 실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함
납세지	납세자의 소득원천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
과세소득금액	과세소득금액 = 수입금액총액 - 공제 가능한 비용

구 분	내 용			
세 율	소득의 종류	세 율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에서 45%까지의 9단계로 구분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사업소득과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	5%~35%의 5단계로 구분된 초과누진세율		
	자유직업소득	과세소득	세율	공제액
		20,000위엔 이하	20	0
		20,000위엔초과 50,000이하	30	2,000
		50,000위엔초과	40	7,000
	원고료	20%의 비례세율		
	산업재산권 사용료소득	20%의 비례세율		
	이자, 배당, 이익분배소득	20%의 비례세율		
	임대소득	20%(서민용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0%)		
양도소득	20%의 비례세율			
우발소득	20%의 비례세율			
기타소득	20%의 비례세율			
조세감면	□ 정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수당 □ 복리비, 위로금, 구호금 □ 보험배상금 □ 제대군인의 전직비용 및 제대비용 □ 국가규정에 따라 간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비, 퇴직금, 퇴직급여, 이직급여 및 이직생활 보조금 □ 중국정부가 참가하는 국제공약, 협정 중에 면세로 규정한 소득 □ 이주보상비 □ 기타 국무원이 승인한 소득			

■ 자원세법

- 자원세는 자연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과세자원인 광물제품 또는 제조업을 채굴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유기업, 주식기업, 기타 기업 및 행정단체, 사업단체, 군사단체, 사회단체,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개체경영자 및 외국인 ※ 미과세광물제품을 구매하는 단체는 자원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과세대상	1) 채굴된 원유 2) 채굴된 천연가스 3) 채굴된 석탄 4) 철 화합물원광(납세자 채굴 후 자가 사용, 판매하는 것으로 직접 제련을 하거나 또는 주 생산품으로 정광을 하여 최종적으로 제련을 하는 원광을 말하며, 철광석, 망간석 및 크롬석이 포함됨) 5) 비철금속원광 6) 기타 비금속원광(원유, 천연가스, 석탄 및 광산염을 제외한 보석, 다이아몬드, 옥석, 흑연, 석영사, 형석 등) 7) 소금(해염, 호수염, 암염을 포함하는 고체염과 일정염도를 가지고 소금의 생산 또는 기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간수 등의 염채염)
과세기간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월
신고납부	납세자가 과세기간을 1월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세액을 예정 납부하고, 익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함
납 세 지	과세자원을 채굴 또는 생산한 소재지의 관할 과세기관에 납부
세 율	〈항목별 적용세율〉 1) 원유 - 채굴된 천연원유에 대해서는 톤 당 8~30위엔 2) 천연가스 - 1,000m ³ 당 2~15위엔 3) 석탄 - 톤 당 0.3~5위엔 4) 철 화합물 - 톤 당 2~30위엔 5) 비철금속원광 - 톤 또는 m ³ 당 0.4~30위엔 6) 기타 비금속원광 - 톤, 캐럿 또는 m ³ 당 0.5~20위엔 7) 소금 - 고체염 톤 당 10~60위엔
조세감면	□ 원유채굴에 사용된 원유 □ 의외의 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 수출하는 과세자원에 대한 과세 등

2. 지방정부수입

■ 토지증치세

- 토지증치세는 단체 또는 개인이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축물 및 그 부속물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임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국유토지사용권과 지상의 건축물 및 부속물을 양도하는 대가를 수취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과세대상	1)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2) 국유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지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물																				
신고납부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7일 내에 신고서에 건축물과 토지사용권증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보고서 및 부동산양도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토지증치세를 신고함. ※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양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매회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동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토지증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납세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세율	〈토지증치세 누진세율표〉 - 양도차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후 공제금액에 속산공제계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속산공제의 방법을 사용함 <table><tr><th>등 급</th><th>양도차익과 공제금액의 비율</th><th>세 율</th><th>속산공제계수(%)</th></tr><tr><td>1</td><td>50%</td><td>30</td><td>0</td></tr><tr><td>2</td><td>50%~100%</td><td>40</td><td>5</td></tr><tr><td>3</td><td>100%~200%</td><td>50</td><td>15</td></tr><tr><td>4</td><td>200%</td><td>60</td><td>35</td></tr></table>	등 급	양도차익과 공제금액의 비율	세 율	속산공제계수(%)	1	50%	30	0	2	50%~100%	40	5	3	100%~200%	50	15	4	200%	60	35
등 급	양도차익과 공제금액의 비율	세 율	속산공제계수(%)																		
1	50%	30	0																		
2	50%~100%	40	5																		
3	100%~200%	50	15																		
4	200%	60	35																		
조세감면	□ 국민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중 공제금액의 20%내에서 토지증치세를 면제함 □ 국가가 수용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 근무지변경, 거주조건개선 등으로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 개인이 근무지의 이동 또는 거주조건의 개선 등을 이유로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조사를 거쳐 토지증치세를 면제하고, 거주기간이 3년~5년인 경우에는 50%감면함. 그러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 도시토지사용세

- 도시토지사용세는 도시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함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시, 현, 건제진, 공업광산지구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체와 개인 2)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체 또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실제 사용자 또는 관리자 3)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실제사용자 4) 토지사용권을 공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															
과세기간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															
신고납부	토지사용세는 분기마다 납부하며,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결정함															
납 세 지	부동산의 소재지의 지방세무국에 납부함															
세 율	<table><tr><th>구 분</th><th>인 구</th><th>m² 당 세액(위엔)</th></tr><tr><td>대도시</td><td>50만명 이상</td><td>1.5~30</td></tr><tr><td>중도시</td><td>20만명~50만명</td><td>1.2~24</td></tr><tr><td>소도시</td><td>20만명 이하</td><td>0.9~18</td></tr><tr><td>현, 건제진, 공업광산지구</td><td></td><td>0.6~12</td></tr></table>	구 분	인 구	m ² 당 세액(위엔)	대도시	50만명 이상	1.5~30	중도시	20만명~50만명	1.2~24	소도시	20만명 이하	0.9~18	현, 건제진, 공업광산지구		0.6~12
구 분	인 구	m ² 당 세액(위엔)														
대도시	50만명 이상	1.5~30														
중도시	20만명~50만명	1.2~24														
소도시	20만명 이하	0.9~18														
현, 건제진, 공업광산지구		0.6~12														
조세감면	□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 등이 사용하는 토지 □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사용하는 토지 □ 종교사원, 공원, 명승지로 사용하는 토지 □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 □ 농축임수산업에 사용하는 토지 □ 비영리의료기관이 사용하는 토지 □ 기업이 설립한 학교, 의원, 탁아소 등에 사용하는 토지 □ 기타 정부정책의 필요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															

■ 도시재산세

- 도시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가액 또는 건축물의 임대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징수하는 조세임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1) 건축물을 소유한 자 2) 건축물의 저당권자 3)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가 건축물의 소재지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인 또는 사용인 4) 건축물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저당, 임대관계에 있어 분쟁 중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인 또는 사용인
과세대상	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함.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양변 지주 등의 보호구조물이 있어 햇빛을 가리거나 또는 바람을 피할 수 있고 내부에서 생산, 교육, 작업, 오락, 거주 또는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함
과세기간	1년
신고납부	재산세는 분기 또는 반년마다 세액을 납부하며,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현지 과세기관이 결정함
납 세 지	건축물소재지에 과세기관에 신고납부함
과세표준	건축물의 가액 또는 건축물의 임대가액
세 율	건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2% 건축물의 임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8%
조세감면	□ 신축건축물의 경우 준공된 달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나, 외상투자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교포 및 화교가 설립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 □ 개축건축물의 개축비용이 신축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준공한 달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나, 외상투자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교포 및 화교가 설립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 □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교포 및 화교가 취득한 비사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 화교, 화교가족이 화교자금으로 취득 또는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증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함 □ 기타

■ 취득세

- 취득세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종의 재산세임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토지사용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체와 개인
신고납부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과세기관이 조사 결정한 기간 내에 취득세를 납부함. 여기서 납세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서에 서명을 한 날 또는 납세자가 기타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성격을 구비한 증빙을 취득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 시기로 함
납 세 지	부동산소재지의 과세기관에 납부함
과세표준	1) 매매의 경우 - 거래가격 2) 증여의 경우 - 과세기관이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 3) 교환의 경우 - 교환된 토지사용권, 부동산의 가격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교환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함 4) 양여받은 토지사용권을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로 납부하는 토지사용권양여비용 또는 토지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 율	3%~5%적용하며, 각 지방정부는 3%~5%의 범위 내에서 현지의 실정에 따라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음
조세감면	□ 국가기관 등의 업무 등 사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도시근로자가 최초로 공공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불가항력으로 주택이 멸시되어 새로 취득하는 경우 □ 수용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 황무지 등을 양여받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 대사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 법인전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구조조정을 위한 주식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기업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기업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기업도산, 파산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기타

■ 경지점용세

- 경지점용세는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농업용지의 보호를 위하여 경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임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경지를 점용하여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기타 비농업분야에 사용하는 단체와 개인										
과세대상	국가소유의 경지와 집체소유의 경지가 포함. 경지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함 (1) 경지의 범위 ① 양곡을 재배하는 토지 ②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③ 채마지 ④ 원예지 ⑤ 황지 ⑥ 유흥지 ⑦ 휴경지 ⑧ 목초, 작물 윤작지 (2) 간주경지점용 점용후 3년 이내에 농지, 양여장, 기타 농업용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부동산 신축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비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지를 점용한 것으로 간주함										
신고납부	납세자는 토지관리부서가 경지점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경지점용세를 납부하여야 함. 경지점용세의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는 토지사용신청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경지점용을 승인한 토지관리부서의 동급 과세기관에 감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토자원부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성급 과세기관에 감면신고를 하여야 함										
납세지	경지점용을 승인한 토지관리부서와 동급인 과세기관										
과세표준	실제로 점용한 경지의 면적										
세율	경지점용세는 1인당 경지점유면적과 현지의 경제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세액을 적용함 <table> <tr> <th>지역(현금 행정구역)</th><th>세액기준 폭</th></tr> <tr> <td>1인 당 경지면적 1무 이하 지역</td><td>2위엔/㎡~10위엔/㎡</td></tr> <tr> <td>1인 당 경지면적 1무~2무 이하 지역</td><td>1.6위엔/㎡~8위엔/㎡</td></tr> <tr> <td>1인 당 경지면적 2무~3무 지역</td><td>1.3위엔/㎡~6.5위엔/㎡</td></tr> <tr> <td>1인 당 경지면적 3무 초과지역</td><td>1위엔/㎡~5위엔/㎡</td></tr> </table> (*)1무의 면적은 666.7㎡(약200평)임	지역(현금 행정구역)	세액기준 폭	1인 당 경지면적 1무 이하 지역	2위엔/㎡~10위엔/㎡	1인 당 경지면적 1무~2무 이하 지역	1.6위엔/㎡~8위엔/㎡	1인 당 경지면적 2무~3무 지역	1.3위엔/㎡~6.5위엔/㎡	1인 당 경지면적 3무 초과지역	1위엔/㎡~5위엔/㎡
지역(현금 행정구역)	세액기준 폭										
1인 당 경지면적 1무 이하 지역	2위엔/㎡~10위엔/㎡										
1인 당 경지면적 1무~2무 이하 지역	1.6위엔/㎡~8위엔/㎡										
1인 당 경지면적 2무~3무 지역	1.3위엔/㎡~6.5위엔/㎡										
1인 당 경지면적 3무 초과지역	1위엔/㎡~5위엔/㎡										

구 분	내 용
조세감면	□ 군사시설용지 □ 철도, 활주로, 항공기계류장 □ 국가가 규정한 서부지역 및 기타 지역의 국도, 지방도로 용지 □ 유아원, 양로원, 병원, 진료소용지 □ 농업에 제공되는 농지수리시설용지 □ 경지로 전환되는 농민주택용지와 당초주택규모 이내의 신주택건설용지 □ 장의, 화장장용지 □ 농민이 신축하여 거주하는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규정된 기준세액의 50%감면 □ 민정부서가 경영하는 장애인고용복지공장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고용비율에 따라 경지점용세를 감면 □ 기타

